

Initial issue 2013.12.01

Doc No.	DI421-33
Rev No.	New
Dept.	상생기획

하도급 거래 내부심의회 운영 지침

김 화 성

승 인 : 품질총괄
(Approved by CS Division General Manager)

한 국 항 공 우 주 산 업 (주)
(KOREA AEROSPACE INDUSTRIES, LTD.)

주의사항 : 출력 또는 다운로드 시, 관리본이 아님. 최신 개정본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 전 K-office 게시판 확인
(Notice : Uncontrolled Copy when Printed or Downloaded. Check K-office bulletin to verify correct revision before use)

	Detail Instruction	Doc No : D1741-33
	하도급 거래 내부심의회 운영 지침	Rev No : New Dept : 상생기획팀

1. 목적

이 지침은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(이하 KAI)가 협력사 선정기준과 절차의 공정한 운영, 불공정한 거래의 사전 예방, 협력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관계 구축 등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.

2. 적용범위

본 지침은 KAI의 전 사업부문에 적용된다.

(KAI와 협력사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KAI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 내 관련 규정에 따른다.)

3. 용어정의

해당사항 없음

4. 일반사항

4.1 위원회 구성 : 내부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, 심의위원회 간사, 동반성장부서 팀장, 생산관리부서 팀장 및 심의사안에 따라서 감사부서 팀장, 유관 사업부서 팀장 등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한다.
심의위원은 해당 조직 내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.

4.2 심의위원장 :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는 동반성장 담당으로 하고, 위원장의 역할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, 회의 진행 및 심의를 주관한다.

4.3 심의위원회 간사 : 위원회의 간사는 동반성장 선임팀장이 맡고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진행, 의견취합, 내용정리 및 통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.

4.4 본 업무표준의 최신현황은 E-Mail(Koffice) 시스템 및 에어로고리(Aerogori)시스템에 조회 가능하다.

4.5 부칙

이 지침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5. 책임

	Detail Instruction	Doc No : D1741-33
	하도급 거래 내부심의회 운영 지침	Rev No : New Dept : 상생기획팀

5.1 상생기획 부서장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과 같다.

- a. 하도급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업무 실행 및 감독
- b. 하도급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관련업무에 대한 최종안 확정
- c. 하도급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업무에 대한 합의
- d. 하도급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관 및 유지

5.2 관련 부서장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과 같다.

- a. 하도급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각종 자료의 보관 및 유지
- b. 하도급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업무에 대한 문의 요청
- c. 하도급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상생기획 부서와 합의하거나 사전 협의

6. 절차

6.1 위원회 운영

6.1.1 단일계약 연간 하도급거래 예사 발주금액이 30 억 이상일 경우 사전 심의하고,
월 1 회 심의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6.1.2 심의회 의결기준은 심의위원 전원 참석하여 과반이상 찬성으로 하며, 심의위원회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합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6.1.3 심의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심의한다.

6.1.3.1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

6.1.3.2 협력사의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

6.1.3.3 협력사의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심의

6.1.3.4 기타 동반성장 관련 의결이 필요할 경우 등

	Detail Instruction	Doc No : D1741-33
	하도급 거래 내부심의회 운영 지침	Rev No : New Dept : 상생기획팀

6.1.3.5 필요시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익명성이 보장 되도록 한다.

6.1.3.6 심의된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되도록 조치 하며,
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한다.

6.1.3.7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.

7. 부칙

7.1 관련절차 : 해당사항없음

7.2 Attachment : 해당사항없음

7.3 양식 : 해당사항없음